

수원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가합2059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피고주식회사 A

변론 종결무변론

판결 선고2017. 1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8,141,272원 및 그 중 728,126,564원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7. 9. 8.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C) 사이에 2016. 7. 4.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주식회사 B(C)에게 특허청 2016. 7. 4. 접수 D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상표권에 관하여,
가. 피고와 주식회사 B(C) 사이에 2016. 7. 4.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주식회사 B(C)에게 특허청 2016. 7. 4. 접수 E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 목록 제9 내지 12항 기재 각 디자인권에 관하여,
가. 피고와 주식회사 B(C) 사이에 2016. 7. 4.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주식회사 B(C)에게 특허청 2016. 7. 4. 접수 F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5. 별지 목록 제13 내지 16항 기재 각 디자인권에 관하여,

가. 피고와 주식회사 B(C) 사이에 2016. 7. 28.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주식회사 B(C)에게 특허청 2016. 7. 28. 접수 G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7.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재판장판사마은혁

판사허정훈

판사전훈자

별지